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57
----------	------

2023년 12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덕희 총무과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제고
- 장기재직휴가와 학습휴가 확대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조문 정비

- 재해구호휴가 신설에 따라 중복 조항 삭제 (안 제14조의2제7항)
-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확대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표 정비 (안 제14조의3 및 [별표4])
-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제도 신설 반영 (안 제14조의4)

나.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4조의2제5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사항 변경

다.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확대 (안 제14조의2제6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부여

라. 특별휴가(학습휴가) 확대 (안 제14조의2제9항)

- 학습휴가 일수 확대 (4일→5일)

Ⅲ.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57호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와 학습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현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9조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²⁾ 적용되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규정 및 적용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타 기관과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장기재직휴가와 학습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 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

- 안 제14조의2제5항은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있는바, 이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³⁾됨에 따라 종전 설치령이 폐지된 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제14조의2제7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의3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방송통신대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88호, 2021. 1. 12., 제정]

의 본문 중 ‘2년’ 을 ‘5년’ 으로 규정하며, 이에 따라 연가가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별표4] 중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4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모두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을 동 개정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이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비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현재 조례	개정조례안
제7조의7(특별휴가)①~⑫ (생략)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제14조의2(특별휴가)①~⑥ (생략)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⑩ (생략)	제14조의2(특별휴가) ①~⑥ (생략) ⑦ <삭 제> ⑧~⑩ (생략)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14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		제14조의4(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

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 설>
--	--	--

2)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의2제6항)

○ 안 제14조의2제6항은 종전 10년 이상의 재직자에게 부여되어온 장기재직휴가에 5년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도 5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조례상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의 합산 일수가 45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이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서도 5년 이상 재직 1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가 신설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현재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경조사, 장기재직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복무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별로 휴가일수를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8년 미만이 공무원에게 10일, 18년 이상 25년 미만 공무원에게 15일, 25년 이상 공무원에게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장기재직휴가는 2014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타시도교육청 평균 장기재직휴가 일수 50.9일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도록 관련 소관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강원도교육청 등 4개 교육청 역시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등 타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2] 타 시·도 장기재직휴가 현황

(기준: 2023.7.20. 단위: 일)

시도	장기재직휴가		
	구분	합계	시행(개정)일
서울특별시교육청	10/15/20	45	2014. 1. 9
서울특별시	5/15/25/25	70	2023. 5. 22.
강원도교육청	5/10/20/20	55	2022. 7. 22.
경상북도교육청	5/10/15/20	50	2023. 5. 25.
인천광역시교육청	5/10/20/20	55	2023. 1. 1.
충청북도교육청	5/15/20/20	60	2020. 9. 29.
경기도교육청	10/20/20	50	2019. 4. 29.
경상남도교육청	10/20/20	50	2019. 10. 31.
광주광역시교육청	10/20/20	50	2017. 12. 15.
대구광역시교육청	10/20/20	50	2019. 12. 30.
대전광역시교육청	10/15/20	45	2022. 4. 15.
부산광역시교육청	10/20/20	50	2015. 1.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0/20/20	50	2019. 9. 30.
울산광역시교육청	10/20/20	50	2019. 12. 12.
전라남도교육청	10/20/20	50	2019. 8. 1.
전라북도교육청	10/20/15	45	2018. 4. 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0/20/20	50	2023. 1. 3.
충청남도교육청	10/20/30	60	2020. 7. 10.

- 따라서 안 제14조의2제5항은 교육감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별로 세분화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저경력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으

로 타 시도와의 균형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장기재직휴가는 타시도교육청(10년, 20년, 30년)과 달리 재직기간 최소연수가 10년, 18년, 25년으로 2년에서 5년 짧게 규정되어 있는바, 타시도교육청과 형평성 차원에서 재직기간 최소연수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학습휴가 확대에 대한 사항(안 제14조의2제9항)

- 안 제14조의2제9항은 기존 4일의 학습휴가를 5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습휴가’는 교육청 소속 전체 지방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교육감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는 연 4일 이내의 학습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학습휴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평생교육법」 제8조에⁴⁾에 따라 공무원들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바, 학습휴가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관련하여 부여하는 특별휴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교육감이 학습휴가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표-3] 학습휴가 연혁 및 관련 내용

개정일	내용	조문
2017. 7. 13. (신설)	- 학교 소속 공무원: 4일	제14조의2(특별휴가) ⑨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은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휴업일을 활용하여 연간 4일 이내 에서 자기계발휴가 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청·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간의 업무연락체계 유지, 학교시설의 보안유지·관리 및 학생교육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인원을 고려하여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018. 4. 26.	- 학교 소속 공무원: 4일 - 기관 소속 공무원: 2일 ※ 명칭변경 (자기계발휴가 → 학습휴가)	제14조의2(특별휴가) ⑨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학습휴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6.> 1.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 연 4일 이내 2. 각급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 연 2일 이내
2020. 12. 3 1. (현행)	- 모든 공무원: 4일	제14조의2(특별휴가) ⑨ 공무원 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 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26., 2020.12.31.>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

○ 다만 학습휴가를 확대할 경우 반사이익으로 현재보다 연가일수가 1일 추가로 보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연가 부여일수 대비 연가 사용률이 약 40%정도 밖에 되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공무원들이 이미 확보된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이러한 학습휴가 확대는 확보된 연가의 미사용으로 인해 경상적 경비인 연가보상비에 대한 예산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3] 연가 사용일수 현황

(단위: 명, 일, %)

연도	구분	본청	유치원	지원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각종	총합계
2021	대상인원	791	137	2,687	882	1,352	986	729	137	7,701
	사용일수	4,771	739	15,253	4,757	8,619	7,980	4,734	916	47,769
	사용평균	6.0	5.4	5.7	5.4	6.4	8.1	6.5	6.7	6.2
	연가부여일수평균	18.4	17.2	18.1	18.4	18.1	17.9	17.8	17.5	18.1
	부여일수 대비사용률	32.6	31.4	31.5	29.3	35.4	45.3	36.5	38.3	34.3

20 22	대상인원	814	137	2,762	932	1,379	980	743	149	7,896
	사용일수	6,333	878	18,872	6,096	11,067	9,639	5,837	1,036	59,758
	사용평균	7.8	6.4	6.8	6.5	8.0	9.8	7.9	7.0	7.6
	연가부여 일수평균	18.4	17.2	17.6	18.0	18.0	17.9	17.4	16.4	17.8
	부여일수 대비사용률	42.4	37.2	38.6	36.1	44.4	54.7	45.4	42.7	42.7

○ 더욱이 현재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업무지침에서는 2일의 ‘사가독서학습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바, 기관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5일, 10년”으로, “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4일”을 “5일”로 한다.

제14조의3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9년 6월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특별휴가) ① (생략) ② ~ ④ 삭제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 <u>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u>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가 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u>10년</u> 이상 18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0일, 18년 이상 25년 미만의 재직자 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5일, 25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u>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u> 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생략) ⑨ 공무원은 「 <u>평생교육법</u> 」 제8조에 따라 연간 <u>4일</u>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생략)	제14조의2(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 ----- ----- -----. ⑥ ----- <u>5년</u>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5일, 10년 ----- ----- ----- ----- <u>장기재직휴가</u> -----. <삭 제> ⑧ (현행과 같음) ⑨ ----- ----- <u>5일</u> ----- -----. ⑩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제14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현행	개정안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가산) ----- 5년 ----- -----. 제14조의4(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 4] <신설 2017.7.13.>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제14조의3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제14조의3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삭제